

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춘남 의원 외 13명

2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,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등을 해소하며,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충전시설 설치시 건폐율 완화 (안 제59조의2)

- 당초 : 20퍼센트
- 개정 : 30퍼센트

나.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창고시설 건축 허용 (안 별표3)

- 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
- 바닥면적 합계 330제곱미터 이하

다.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(판매시설)의 연면적 기준
완화 (안 별표13)

- 당초 : 1천제곱미터 이상
- 개정 : 3천제곱미터 이상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,
「건축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3. 30. ~ 4. 6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
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
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,
-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보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가스충전소를
설치할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낮아 이미 개정 시행되고

있는 상위법률에 맞추어 건폐율을 상향하여 충전시설 설치가 원활
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30%까지 완화하고,

-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바닥면적 330m² 이하 창고시설의 건축을
허용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며,
-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 기준을 현행 1,000m²
까지에서 3,000m²까지로 완화시킴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 및
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